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자”를 각각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로 한다.

제14조제2항제6호 중 “법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9조의3제1항·제4항”을 “법 제9조제4항·제5항 및 제9조의3제1항·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종류와 부위를 말하며, 식용란과 원유의 경우에는 종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조연월일·수입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제조연월일·수입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산란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업자 및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영업자 :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나. 가축사육업자 : 가축·원유·식용란의 종류, 농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농장주) 성명

제31조제1항제1호의2 중 “법 제9조의3제5항”을 “법 제9조의3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법 제9조의3제7항”을 “법 제9조의3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법 제9조제3항부터 제6항”을 “법 제9조

제4항부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법 제9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9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9조제8항”을 “법 제9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9조제9항”을 “법 제9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9조의3제5항”을 “법 제9조의3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9조의3제7항”을 “법 제9조의3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법 제12조제7항”을 “법 제12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또는 식용란을 생산하는”을 “또는”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가공업”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아목부터 위반행위 터목까지를 각각 위반행위 차목부터 위반행위 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차목(종전 아목)의 법 조문란의 “법 제47조제2항제1호”를 “법 제47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 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한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1호	300	400	500
자. 법 제9조제9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가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1호의2	300	400	500

부 칙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 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 사가 해당 <u>영업자</u> 에게 통보하여 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 는 시·도지사가 해당 <u>영업자</u> 에 게 통보하여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① - ----- ----- ----- <u>영업자 또는 가축사육</u> <u>업자</u>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영업자 또</u> <u>는 가축사육업자</u> ----- -----. 1. 2. (현행과 같음)
제14조(검사관의 자격·임무)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u>법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u> <u>9조의3제1항·제4항</u>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 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 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제14조(검사관의 자격·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u>법 제9조제4항·제5항 및 제</u> <u>9조의3제1항·제5항</u> ----- ----- ----- -----

(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점검·지도, 조사·평가 및 적정성 검증 등에 관한 업무

7. ~ 19. (생략)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① (생략)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생략)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3. 해당 축산물의 제조연월일·수입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7. ~ 19. (현행과 같음)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종류와 부위를 말하며, 식용란과 원유의 경우에는 종류를 말한다)

3. 해당 축산물의 제조연월일·수입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산란일

5.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③ ~ ⑤ (생략)

1. (생략)

1의2.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업
소에 대한 출입·조사

5. 영업자 및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영업자 : 영업의 종류, 영업
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나. 가축사육업자 : 가축·원
유·식용란의 종류, 농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농
장주) 성명

③ ~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9조의3제6항-----

1의3. 법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1의4. ~ 14. (생략)

②·③ (생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
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
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
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도
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
한 사항은 제외한다)

2.·3. (생략)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
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
탁한다.

1. 법 제9조제3항·제5항 및 제
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

1의3. 법 제9조의3제8항-----

1의4. ~ 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 법 제9조제4항부터 제7항---

2.·3. (현행과 같음)

⑤ -----

-----.

1. 법 제9조제4항·제6항 및 제
7항-----

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 ----- -----
2. <u>법 제9조제8항</u>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2. <u>법 제9조제10항</u> ----- ----- ----- -----
3. <u>법 제9조제9항</u>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3. <u>법 제9조제11항</u> ----- ----- ----- -----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6. <u>법 제9조의3제2항</u> 및 <u>제3항</u> 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평가 및 지원	6. ----- <u>제4항</u> ----- ----- ----- -----
7. <u>법 제9조의3제5항</u>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조사	7. <u>법 제9조의3제6항</u> ----- ----- ----- -----
8. <u>법 제9조의3제7항</u> 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8. <u>법 제9조의3제8항</u> ----- -----
9.·10. (생략)	9.·10. (현행과 같음)
11. <u>법 제12조제7항</u> 에 따른 농장에서의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	11. <u>법 제12조제8항</u> ----- ----- --

12. · 13. (생략)	12. · 13. (현행과 같음)
1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 축업·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축장·집 유장 <u>또는</u>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	14. ----- ----- ----- ----- -- <u>또는</u> ----- ----- -----
15. ~ 21. (생략)	15. ~ 21. (현행과 같음)